

점검결과 처분 요약

연번		처 분
1	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 부당 적용 - 일부 정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대학성적을 차등반영하거나, 본원 비정규직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함.	○ 경고 ○ 통보
2	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점수산정 등 부적정 -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력가점 산입이 누락되거나, 대학성적 기재 오류가 발생함.	○ 경고 ○ 통보
3	최종면접 합격자 결정방법 등 부적정 - 면접위원 간 합의로 합격 및 불합격자를 결정하고, 면접위원들은 채점표에 총점만을 기재하거나 합격자에 대한 표시(○, √ 등)만하고 면접 종료 후 인사팀에서 합격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.	○ 경고
4	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근속기간 산정 부적정 -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산정시 인사위원회 의결과 달리 근속기간 산정기준일(2016.11.4.)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다는 등 사유로 산정기준일을 2016.11.4.에서 2016.12.4.로 변경함.	○ 경고 ○ 통보
5	강남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- 강남센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강남센터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채용, 보수, 근로조건을 결정함.	○ 경고
6	사무직(변호사) 채용 부당 -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배수 적용을 규정 및 당초 채용 계획과 달리 변경·시행함.	○ 경고 ○ 통보